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1,691,520	12,650,746
일반회계	401,300,705	12,039,021
특별회계	20,390,815	611,724
기타특별회계	20,390,815	611,72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68,936	20,068
주차장 특별회계	11,136,934	334,10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94,684	26,841
기반시설 특별회계	1,317	40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828,135	24,844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26,473	9,794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6,534,336	196,0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457,957천원(일반예비비 3,106,9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3,351,05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8년도 지방채한도액은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2018년 제2회 추경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부되는 국·시·도비보조금(구비부담분 포함), 지방교부세, 특정목적기부금 등은 예산의결(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한다.

※ 예산서 자원표기

[국] 국고보조금, [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 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재원